

의안번호	2208247
의 퇴 인	강명구의원
회 답 일	2025.3.14.
추계번호	25D0939
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 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8조의7제1항 (고독사 예방 및 장례서비스) 신설	국가보훈부장관은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고독사(이하 “고독사”라 한다)의 위험이 있는 고엽제후유증환자·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음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근거규정
1	안 제8조의7제1항 (고독사 예방 및 장례서비스) 신설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사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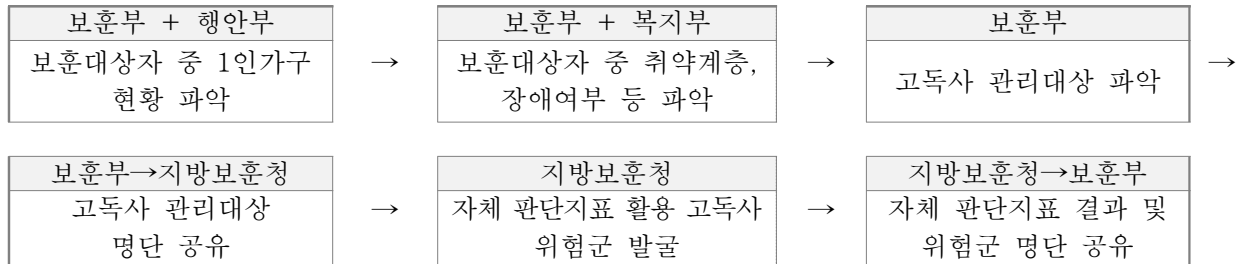
- 개정안은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고독사(이하 “고독사”라 한다)의 위험이 있는 고엽제후유증환자·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, 고독사 예방 및 대응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국가보훈부는 2025년 2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“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대책”¹⁾을 수립하고 다양한 고독사 예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

1) 국가보훈부는 “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대책”이 협의의 국가유공자 뿐만 아니라 참전유공자, 5·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보훈보상대상자 등 보훈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

설명

- 국가보훈부는 고엽제후유증환자·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를 포함한 보훈대상자의 고독사 관리대상을 확대하고 위험정도 판단을 위한 자체 판단지표를 개발

[표 1] 고독사 위험군 발굴 체계도



자료: 국가보훈부

- 관리대상을 전연령으로 확대하고 분류기준을 4단계로 세분화하는 등 고독사 위험군 발굴체계를 개선

[표 2] 고독사 위험군 발굴체계 변경사항

구분	기 준	개 선
관리대상	65세 이상+1인가구+취약계층 +복지서비스 미수혜자(6,679명)	전 연령+1인가구+취약계층+ 복지서비스 미수혜자(8,522명)
분류기준	3단계 (고위험군-위험군-의심군)	4단계 (고위험군-중위험군-저위험군-의심군)
판단지표	장애 정도	장애 정도 +유공자 특성+사회적 관계
대상발굴	통계 기반	판단지표 기반 전수조사

자료: 국가보훈부

- 2024년 7월부터 비예산사업인 AI기반 자동안부확인 서비스인 “보보안심콜” 서비스를 추진
 - 보보안심콜 서비스는 (주)켈컴-(주)루키스와 MOU를 통한 민관협업 비예산 사업으로, 고령의 독거 보훈대상자들의 스마트폰에 설치해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로, AI기반 안부확인전화, 걸음 수 및 충격감지, 전화 미수신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신고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

고 설명하고 있음

- 향후 IoT 디바이스(스마트플러그²⁾·문열림센서³⁾)를 통한 실시간 안부확인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
- 개정안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·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근거가 마련되어 신규 예산사업을 추진할 경우 추가재정소요 발생 가능성이 있으나, 구체적인 사업계획 미비로 현 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
IV. 부대의견

- 해당사항 없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전수연	김안나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전수연	02-6788-4667	syjeon@assembly.go.kr

2) 스마트 플러그는 전력사용량 확인을 통한 실시간 안부확인 서비스임

3) 문열림센서는 현관문에 센서를 설치하여 출입기록 확인을 통한 안부확인 서비스임